



REPUBLIC INDONESIA

## 인도네시아공화국 청년 및 체육성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성사이의 체육협조에 관한 량해문

인도네시아공화국 청년 및 체육성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성(이  
아래부터는 개별적으로 《일방》, 집체적으로는 《쌍방》이라고 한다)은  
두 나라사이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,

두 나라의 리익에 맞는 체육교류를 장려하고 발전시키는 사업의  
중요성을 인식한데 기초하여,

1963년 11월 15일 쟈까르따에서 조인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
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사이의 과학, 기술, 문화협조에 관한  
합의서에 기초하여,

두 나라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### 제 1 조

#### 협 조 목 적

본 량해문에 따르는 협조는 쌍방사이의 호혜와 호상리해, 호상리익에  
기초하여 체육분야에서의 인재양성을 장려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

#### 협 조 분 야

1. 고위급인물들의 래왕

2. 경기, 대중체육, 체육문화, 체육의학, 체육산업, 체육법분야에서 선수, 감독, 전문가, 체육교문, 연구사들사이의 협조
3. 체육과학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술토론, 과학연구, 과학기술을 추동하기 위한 두 나라 체육기관들사이의 협조
4. 두 나라의 법에 준하여 체육에 관한 자료, 출판물, 기록과 교재들의 교환
5. 공동훈련과 선수선발을 비롯하여 두 나라의 체육성과들을 높이기 위한 사업
6. 체육시설 및 기재의 발전
7. 반도평사업에서의 협조
8. 여러 체육종목에서 친선경기 및 공동훈련조직
9. 민족체육종목들의 장려와 발전
10. 쌍방사이에 호상 합의되는 기타 공동의 활동

### 제 3 조

#### 리 행

본 량해문은 활동계획, 집행계획 기타 형태 혹은 호상 합의한 다른 형태의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을 실행하는것을 통하여 리행된다.

구체적인 사업내용에는 무엇보다도 계획과 활동, 재정문제, 해당 쌍방의 책임과 기타 현관된 문제들을 명백히 반영 할것이다.

### 제 4 조

#### 지 적 소 유 권

1. 쌍방은 각기 자국내 국내법에 따라 자국령토내에서 다른 일방의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.

2. 본 량해문에 따라 집행되는 그 어떤 활동이나 계획 혹은 대상이  
지적소유권에 귀착되는 경우 지적소유권은 각기 자국의 법과 규정에  
따라 쌍방사이에 합의한 별도의 절차에 준한다.

## 제 5 조

### 재정조건

쌍방은 본 량해문 리행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편성,  
예산검토와 국내법 조항에 따라 예산에 할당된 재정으로 부담한다.

## 제 6 조

### 인원의 활동제한

1. 쌍방은 본 량해문과 관련한 활동에 참가하는 자기의 인원들이 다른  
일방의 정치적자주성, 자주권과 영토완정을 존중하도록 하며 인원들이  
다른 일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며 본 량해문의 목적과 내용에  
부합되지 않는 그 어떤 활동도 하지 않도록 한다.
2. 이 조항 1 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인원들의 모든 권한을  
박탈하며 주최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## 제 7 조

### 인원의 안전

일방은 자국령토내에서 본 량해문에 따르는 계획 혹은 활동을 리행하는  
기간 다른 일방 인원들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## 제 8 조

### 비 밀 보 장

1. 쌍방은 본 량해문리행을 위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접수하거나 다른 일방이 제공한 문서, 자료와 기타 기록자료들에 대한 비밀엄수를 보장한다.
2. 어느 일방이 3 자에게 기밀문서와 자료를 공개하려는 경우 다른 일방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는다.
3. 쌍방은 본 량해문이 종결된후에도 이 조항이 쌍방사이에 계속 구속력을 가진다는것을 합의한다.

## 제 9 조

### 분 쟁 해 결

본 량해문의 해석 혹은 리행과정에 발생하는 그 어떤 분쟁이나 불일치는 쌍방사이의 외교적경로를 통하여 협상 혹은 협의의 방법으로 우호적으로 해결한다.

## 제 10 조

### 수 정

본 량해문은 쌍방사이의 서면합의에 따라 어느때든지 검토 혹은 수정될수 있다.

이러한 수정은 쌍방이 결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량해문의 불가분리의 부분으로 된다.

## 제 11 조

### 효력발생, 기간과 종결

1. 본 량해문은 마지막 수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2. 본 양해문은 5(오)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파기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5(오)년간씩 연장된다.
3.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 종결만기 6 개월전에 본 양해문에 종결 할데 대한 서면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본 양해문을 종결할수있다.
4. 본 양해문의 종결은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한 현 양해문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, 계획과 활동이 완료될때까지 그러한 사업, 계획과 활동의 효력과 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이에 대한 증빙으로써 아래의 서명자들이 본 양해문에 수표하였다.

2016년 09월 09일 자까르따에서, 2016년 9월 18일 평양에서  
서명되었다. 인도네시아어, 영어, 조선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된 모든  
원문들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본 양해문에 대한 해석에서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 영어문에 준한다.

인도네시아공화국

청년 및 체육성을 대표하여

**Signed**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

체육성을 대표하여

**Signed**